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36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노인학대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 해 주세요.

노인학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 1 경찰 (112)
- 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3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신고 앱

노인학대 유형 알아보기



신체적 학대

- 1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1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1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1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 2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1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1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2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01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0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03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04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05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06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07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08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09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10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11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2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13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합니다.

-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헛웃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요양원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직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 주세요.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며 존칭을 사용하여
예의를 지켜 주세요.



우리 요양원 폭언 · 폭행 · 성희롱 예방수칙



폭언 예방하기

- 1 부드럽고 긍정적인 언어로 대화하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2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피하고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네 주세요.



폭행 예방하기

- 1 폭행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2 모든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하기

- 1 성희롱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2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피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STOP!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